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 경위

- 가. 발 의 자: 김태수 의원 대표발의(외 10명)
- 나. 의안번호: 제1410호
- 다. 발의일자: 2020. 4. 3
- 라. 회부일자: 2020. 4. 8

2. 제안 사유

현행 조례에서 사업시행자인 (주)세빛섬은 공공성 확보계획에 따라 매년 공익성 사업을 실시해야 하지만 대상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공공성 확보계획에 공공의 안전 및 보건위생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인정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에 공공의 안전 및 보건위생 등을 포함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1항제3호).

나. 현행 조례의 내용 중 띄어쓰기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함.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 이재효)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에 공공의 안전 및 보건위생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 사업시행자가 보다 폭 넓은 공익성 사업을 추진하고 세빛섬의 시민이용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세빛섬 운영 현황 및 배경

- 반포한강공원에 위치한 세빛섬은 총 사업비 1,390억원(민간자본)을 들여 3개의 인공섬(가빛섬, 채빛섬, 솔빛섬)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으로 2014년에 개장되었고,
- 현재, 사업시행자인 (주)세빛섬이 20년간 무상운영한 뒤, 서울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며, 이후 10년간 유상사용할 예정임.

<표 1> 세빛섬 운영 현황

◆ 위치	반포한강공원(반포대교 남단 좌측)			
◆ 총사업비	1,390억원			
◆ 준공일	2011. 9.			
◆ 개장일	2014. 5(부분개장), 2014. 9(전면개장)			
◆ 사업자	(주)세빛섬			
◆ 운영기간	20년 운영후 기부채납(BOT 방식) + 10년 유상사용			
구분	계	가빛섬	채빛섬	솔빛섬
면적	9,995㎡	5,523㎡	3,449㎡	1,023㎡
주용도		카페, 레스토랑, 컨벤션	편의점, 레스토랑	전시/공연장
수용인원	5,385명	3,600명	1,450명	335명



- 당초 세빛섬은 완공 직후인 2011년 9월에 전면 개장할 예정이었지만, 안전성과 운영사업자 선정 등의 문제로 개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서울시는 세빛섬 개장지연을 이유로 2012년 8월 사업 시행자에 91억 9천2백만원의 지체상금으로 부과하였으나 2014년 3월 동 조례를 제정하여 20년 동안 사업시행자가 공공성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2) 세빛섬의 공공성 확보 사업 추진 실적

-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사업시행자인 (주)세빛섬에서 2015년부터 매년 공공성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19년말 기준 지체상금 부과액은 66억 4천만원임.

<표 2> 연도별 지체상금 부과취소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체상금	사업정산 (감액)	잔 액 (이월)	비 고
2015년	9,192	921	8,271	매년 사업 완료후, 외부 공공성 심의 위원회를 개최 심의 의결함
2016년	8,271	444	7,827	
2017년	7,827	253	7,574	
2018년	7,574	429	7,145	
2019년	7,145	505	6,640	

<표 3> 세빛섬 공공성확보 사업 추진실적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정산금액 25억 5천2백만원	9억 2천1백만원	4억 4천4백만원	2억 5천3백만원	4억 2천9백만원	5억 5백만원
사회적 약자 지원·복지단체 협력 7억 6천4백만원	멘토·멘티 만남의 날	AT EDUCOM 국제포럼 개최	저소득 다문화 가정 문화역사 교육운영	저소득 다문화 부부 결혼식 지원사업	장애인 인식개선 "스포츠 스타와 멘토링프로그램" 등
	저소득·다문화가정 문화·역사 교육	장애인·탈북민 일자리 창출	폐지수집 노인 지원사업	폐지수집 노인 지원사업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신진작가&미술영재 멘토링프로그램"
	장애인 일자리 창출 NGO 단체 지원	어르신 힐링 나눔		소외 계층 아동 지원사업	
	온누리 사랑 챔버 연주회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			
	세빛영상 페스티벌				
	한강몽땅 페스티벌과 연계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서울복지국제포럼				
공익적·문화적 서비스 제공 7억 8천만원	어린이날 가족 나들이	문화소의 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 셔틀버스 운영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 셔틀버스 운영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 셔틀버스 운영
	영상 콘서트 축제	세빛섬 가을 축제	한강몽땅 페스티벌	한강몽땅 페스티벌	한강몽땅 페스티벌] 지원
	신예 아티스트 문화·예술 축제	신예 아티스트 문화·예술 축제	신예아티스트 문화 예술 축제	신예아티스트 문화 예술 축제	청년 문화 공유
	SBS 러브 FM '최백호의 낭만시대' 공개방송 지원			세빛섬 가을 축제	
관광 MICE 활성화 9억 8천3백만원	한강 상징 조형물 전시	한강 봄꽃 축제	한강 봄꽃 축제	한강 봄꽃 축제	서울 관광활성화 (1) "스포링 블로썸" 캠페인
		한강 상징 조형물 유지관리		한강 달빛 축제	서울 관광활성화 (2) "겨울빛 축제 신규 이벤트" 등
기타	평가단 회의 및 수당 등	평가단 회의 및 수당 등	평가단 회의 및 수당 등	평가단 회의 및 수당 등	평가단 회의 및 수당 등

- 그동안 세빛섬 공공성 확보 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 지원·복지단체 협력, 공익적·문화적 서비스 제공, 관광·MICE 활성화 등 3개 분야에서 총 25억 5천2백만원을 공익사업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축제성 사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지원에서는 2015년을 제외하고 사업내용이 점차 획일화되는 등 다양한 공익성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3) 조례 개정의 필요성 검토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조례 제5조제1항에 명시된 공공성 확보 계획에 따라 매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상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획일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안 제5조제1항제3호와 같이 현행의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에 안전 및 보건위생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한강공원과 세빛섬을 찾는 시민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매년 공공성 확보 계획과 그 이행사항을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는데, 시의회에서도 사업의 이행내역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